자원재활용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재활용률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동참하고자 하는 인식 및 관련 법령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각종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원재활용 1
1. 자원재활용 개관 4
1.1. 자원재활용 개요 4
1.1.1.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4
1.2.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분리수거·재사용 4
1.2.1. 폐기물의 발생 억제 4
1.2.2. 폐기물의 분리수거·재사용 8
2. 분야별 재활용 12
2.1.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12
2.1.1. 생산자의 의무 및 폐기물부담금 12
2.1.2.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15
2.2.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 19
2.2.1.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19
2.2.2. 폐자동차의 재활용 22
3. 재활용 촉진 25
3.1. 재활용센터 25
3.1.1.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등 25
3.2. 자금 지원 25
3.2.1.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25
3.3. 시설 지원 26
3.3.1.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26

1. 자원재활용 개관

1.1. 자원재활용 개요

1.1.1.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폐기물의 발생 억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1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제2항).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사용 등

▪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4호).

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2.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3.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4.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 재사용 등 용어의 해설
>
> ·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 ·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 ·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1.2.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분리수거·재사용

1.2.1. 폐기물의 발생 억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 제품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 제조자등이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2).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요약)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하며,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와 인삼음료용 제품은 제외), 벌꿀 및 다류(침출차·고형차·커피를 말하며, 액상으로 된 음료용 제품은 제외)의 제품을 포함합니다.
	음료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먹는 샘물 포함)을 말하며 다류·인삼제품 등 건강·기호식품중 액상(液狀)으로 된 음용제품을 포함합니다. 단, 주류 및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는 제외합니다(다만,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 중 커피고형분 0.5% 이상 함유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음료류에 해당).
	주류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 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주류로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
	제과류	식물성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인삼과자류(인삼캔디류, 인삼추잉껌) 등의 제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포장내용물 80㎖ 또는 80g 이하는 제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을 표시한 제품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중 인체 세정용 제품(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외음부 세정제 및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버블 배스 등 세정용 제품) 및 두발 세정용 제품(샴푸, 린스 및 그 밖의 두발 세정용 제품)을 말합니다(영·유아용 제품 및 화장비누 포함).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은 제외),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을 말합니다.
세제류	세제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하며 주로 섬유 등의 고체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과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약제로서 습윤, 침투, 유화, 분산, 가용호 등 계면활성 복합작용으로 세정작용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잡화류	완구·인형류	자동차·로보트·무기·집·건물·악기·글자나 그 밖의 생활용품 등 각종 모형의 장난감 및 그 부속품과 사람 또는 동물모형의 인형 및 그 부속품 등으로서 조립품과 완성품(동력식과 무동력식, 사용연령 불문)을 말합니다.
	문구류	필기용구·공책·회화용품 등 학용품과 사무용품을 말합니다.
	신변잡화류	지갑 및 허리띠에 한합니다.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을 말합니다.
의류	와이셔츠·내의류	와이셔츠와 각종 내의(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캐미솔, 슈미즈, 슬립 등을 포함) 제품을 말합니다.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1차식품(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 가공식품, 음료류,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세제류 또는 잡화류의 제품으로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 제조자등은 다음의 제품에 대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받침접시)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및 별표 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 거래되는 사과·배

▹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류 중 신선한 것), 축산부류(조수육류 및 난류 등), 수산부류(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류 및 젓갈류 등)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준수해야 할 기준

▪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 제조자등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첩합(래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 제조자등은 다음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폴리염화비닐, PVC)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1. 계란·메추리알
2.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 합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밖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제조자등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해 다음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년·2004년	2005년·2006년	2007년 이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 거래되는 사과·배	받침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표시

▪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다음과 같이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별표 2).

검사결과	포장재질	1차: 2차:
	포장공간비율	%(기준: % 이하)
	포장횟수	차(기준:차 이내)
검사성적서 발행번호		
검사일 등		
전문검사기관명		

※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는 1회용품 줄이기도 중요합니다.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1회용품 줄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폐기물의 분리수거·재사용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분리 보관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 "폐기물배출자"란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연접(連接)한 부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

폐기물의 분리 보관 의무

▪ 폐기물배출자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및 별표 3).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함)

√ 공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장 이외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자만 해당)

√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해야 합니다.

√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사료·퇴비 등으로 감량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방문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지도해야 합니다.

▹공장 이외 그 밖의 시설의 점유자

√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 또는 고철류 등 분리수거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보한 분리수집 장소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보관되도록 배출해야 합니다.

√ 시설에서 다량 배출되는 종이류는 종류에 따라 복사용지(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및 크라프트지를 포함), 신문용지 또는 판지 등으로 분리수집해야 합니다.

√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리병은 무색, 청색(녹색을 포함) 또는 갈색의 3색으로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분리 보관 의무 미이행 시 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폐기물의 분리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지키지 않은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본문).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해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단서).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의무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는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4호).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제조자등이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는 제품·포장재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

1.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貼合)·도포(塗布)된 종이팩만 해당],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2.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함)

   나. 농수축산물(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함)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반려동물용 샴푸·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함)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함)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그 밖에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함)

   카.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타. 위 가.부터 카.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플라스틱용기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함)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4.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한국환경공단의 지정을 받은 제품·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의무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

▪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3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등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을 포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해당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은 자

분리배출 표시 의무의 적용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

▹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은 필름·시트형 포장재

▹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함)

√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분리수거의 기준

지역 실정에 따른 분리수거 기준의 설정 및 운영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 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및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본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하여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해 적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

폐기물의 재사용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 제조자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 등”이라 함)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함)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아래 1.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다음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가.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나. 음료류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2.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위 가. ~ 다.까지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위 2.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함)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 용기의 규격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표 4).

대상 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빈용기	190㎖ 미만	20원/개	70원/개
	190㎖ 이상 400㎖ 미만	40원/개	100원/개
	400㎖ 이상 1,000㎖ 미만	50원/개	130원/개
	1,000㎖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1회용 컵	-	300원/개	

▪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

1. 용기 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 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용기 등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5. 용기 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6.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반환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제7호).

> ※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소매업자 등)가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주무관청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건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6 및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7조).

2. 분야별 재활용

2.1.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2.1.1. 생산자의 의무 및 폐기물부담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 위탁

재활용의무생산자

▪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함)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구분	내용
1.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 아래 2.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함)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함)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함)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함)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함) 카.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7.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타. 위 가.부터 카.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함)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4.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과 같은 필름류(1.부터 3.까지의 포장재는 제외)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함)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지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6. 다음 어느 하나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7. 다음 어느 하나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
8. 다음에 해당하는 조명제품	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 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9. 합성수지재질의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
10. 곤포(뭉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함
11.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함
12.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13.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를 말함

※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재활용의 위탁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수·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함)
  - √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해당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38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의5).

※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

▹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

▹ 담배(「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의 제품은 제외함

√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합성수지 섬유제품

√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폐기물부담금의 감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

▹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②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③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④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⑤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⑥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⑦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⑧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2.1.2.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분리배출 요령

제품·포장재별 분리배출 요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및 별표 1).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 ※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물로 헹군 후 반납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화분, 그릇 등) 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은 제거한 후 배출 -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 폭발성과 인화성이 있는 내용물이 남아 있는 캔류는 위험성을 표시하여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부탄가스 등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눌러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식품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완구류(전지나 전기를 사용하여 충전·작동하는 전기·전자완구 제외)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와 함께 배출 합성수지 용기·트레이와 함께 배출이 어려운 대형완구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활동·미술공예·퍼즐·기능성·게임·승용·발사체·역할놀이·악기·운동·유아·블록·모형·자석·기구·교육용·조립완구 등 ※ 비해당 품목 : 파티완구(가장복, 가발 등), 봉제인형,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완구류는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의류, 잡화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비해당 품목 : 이불, 베개, 방석, 인형, 골프가방, 매트류, 가죽 부츠, 롱부츠, 바퀴 달린 가방, 인라인 스케이트, 해지거나 오염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의류와 잡화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차.전지류	·1차전지(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등) ·2차전지(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 등)	- 전지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전지를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은 전지만 분리하여 전지수거함에 배출 ※ 내장된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제품은 제품 그대로 전지수거함 또는 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에 배출(분리된 전지의 단자가 노출된 경우 절연테이프 등으로 절연 조치 또는 비닐팩 밀봉 후 배출)
카. 전기·전자제품	대형 전기·전자제품	- 대형전기·전자제품은 신제품 구입시 판매업자를 통한 역회수하거나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이용 또는 지자체 대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판매 가능 ※ 해당품목 예시 :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태양광 패널,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등
	소형 전기·전자제품(전지내장형 제품, 전기·전자완구, 기타 소형가전 등)	- 소형전기·전자제품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소형전기·전자제품은 제품 그대로 소형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 또는 전지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와 같이 형광등이 포함된 경우 형광등은 분리하고 배출 ※ 해당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주전자, 토스트기, 제빵기, 헤어드라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이어폰, 전기손난로, 멀티탭 등 대형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
파. 조명제품	·형광등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 형광등과 LED는 깨지지 않게 하여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형광등과 LED가 깨진 경우에는 신문지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감싼 후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품목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 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기타 플라스틱류(비닐류, 비전기·전자 완구류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색상 구분 없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의류	의류, 잡화	위 1.의 세부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전지류	1차 전지, 2차 전지	
	전자제품	대형전기·전자제품 소형전기·전자제품	
	조명제품	형광등, LED조명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 출 요 령
가.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나.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라. 납축전지	자동차 폐납축전지	지차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승강기 폐납축전지	지자체가 지정한 수거장소에 배출
마.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바.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사. 원단류	섬유 재질 원단 봉제공장 등 원단조각	의류와 구분하여 물기에 젖지 않도록 전용마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하는 등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방법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방법

▪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표 6).

2.2.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

2.2.1.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전기·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전기·전자제품별 분리배출 요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전기·전자제품	대형 전기·전자제품 ※ 해당품목: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태양광 패널,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등	대형전기·전자제품은 신제품 구입시 판매업자를 통한 역회수하거나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이용 또는 지자체 대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판매 가능
	소형 전기·전자제품(전지내장형 제품, 전기·전자완구, 기타 소형가전 등) ※ 해당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주전자, 토스트기, 제빵기, 헤어드라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이어폰, 전기손난로, 멀티탭 등 대형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	소형전기·전자제품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소형전기·전자제품은 제품 그대로 소형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 또는 전지수거함에 배출 스탠드와 같이 형광등이 포함된 경우 형광등은 분리하고 배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의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란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함)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인계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1호의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의무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란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규모의 사업장(다만,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또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함)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본문).

※ 다만,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인계의무가 없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단서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1호의3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5항).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전자제품을 말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품군	대상 제품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가.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가.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 나. 이동전화단말기 다. 통신·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 라.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3.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방법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제품군별 기준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해체·선별·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함	폐전기·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함	가. 염화불화탄소(CFC) 등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함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 이상이어야 함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가. 전기·전자제품에 내장된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에 따른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따름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어야 함 1)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 70퍼센트 2) 이동전화단말기 및 그 밖의 통신·사무기기: 80퍼센트 3)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75퍼센트
3. 태양광 패널			가.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셀(Cell) 등에 포함된 중금속(6가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으로 한정함)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지정폐기물의 요건으로 정한 각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최소값 미만으로 관리해야 함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 이상이어야 함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회수 등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물질

2.2.2. 폐자동차의 재활용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라 함)는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해 재활용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기존의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자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

5. 폐가스류처리업자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1.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
2. 2015년 1월 1일 이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

※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한 의무

▪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합니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2.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해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해야 합니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 및 무상회수 등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

▪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는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맞게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4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다음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라 회수·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15조의4).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물질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보관 및 인계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3호).

▪ 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4호).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 산정

▪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처리·재활용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등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무상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본문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1.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가 없는 자동차
2.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하지 않아도 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단서).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해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무상회수하지 않거나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제3호).

3. 재활용 촉진

3.1. 재활용센터

3.1.1.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등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재활용센터의 설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하 “재활용센터”라 함)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재활용센터의 설치·시설 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3. 진열되지 않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 중고물품의 수거·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 중고물품의 교환·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재활용센터의 활용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 ※ 지역별 재활용센터의 설치 현황은 ´순환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www.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자금 지원

3.2.1.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자금 보조, 융자 또는 차관 알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함)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9.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10.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의 우선지원

▪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해 위의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1항).

▪ 이 경우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2항).

3.3. 시설 지원

3.3.1.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관리

재활용단지의 조성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1. 한국환경공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위의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전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1. 위치도

2.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집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1. 시·도지사

2. 한국환경공단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3항).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를 위한 시설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1항).

시설의 공동설치·운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의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2항).

비축 시설의 설치·운영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 그 밖에 다음의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함)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3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

1. 수출용 중고의류

2. 유리 및 유리병류(수거 후 세척된 것으로 한정함)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

▪ 위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4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